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73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차규근 · 정춘생 · 서왕진
신장식 · 김준형 · 백선희
최혁진 · 양부남 · 이해민
김선민 · 서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 · 경남 · 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여 극심한 인명 피해와 주택 · 시설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피해 확산의 원인에는 실화와 더불어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적 요인들도 지적되고 있음.

현행 「산림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 예방부터 진화 · 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소방청은 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불의 규모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휘권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지사, 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지고, 실제 산불 현장에서는 다수 기관이 복수적으로 관여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은 화재 진압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휘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불 진화 실무는 소방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주관기관이 달라 장비·인력의 중복과 예산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예방 및 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산불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

나. 산불의 보호 대상으로 기존의 토지 외에도 건물도 포함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

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산불진화기관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시 통보 대상에 소방청장 및 산불진화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

난방지법 제 7조).

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 대상을 산불진화기관까지 확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

마. 산림청장이 구성·운영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업무 중 산림재난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만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2조).

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의 업무에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진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3조 및 제37조).

사. 산림청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불의 예방·조사,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48조 및 제55조 등).

아. 산불 신고 접수 기관에 산불진화기관을 추가하고,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시 산불진화기관이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

자. 산림청장의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차.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을 삭제하고 산불 진화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소방청 등에서 대응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불 진화는 제10호의2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한다.

10의2. “산불진화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을 “토지 및 건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산림청장, 소방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불진화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2의2. 산불진화기관에 대한 산림재난방지 관련 정보 제공, 시설·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을 각각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불진화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초동조치 및 지휘”를 “초동조치”로 한다.

제13조 중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경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예방·대비 체계”를 “예방 체계”로, “따라야”를 “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불방지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불방지에”를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림재난방지기관, 산불진화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을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불진화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산불진화기관”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산불 진화) 산불 진화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산불진화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산불진화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을 “산불진화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산림재난방지기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산불진화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의 장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예방과 진화”를 “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를 “산불진화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화재 조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를 “산불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7조 본문 중 “인명구조작업”을 “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u><신설></u> 11. ~ 14. (생략)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다만, 산불 진화는 제10호의2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한다. 10의2. “산불진화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을 말한다. 11.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 범위) ----- ----- -----. 1. ----- ----- ----- -----토

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2.·3. (생략)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
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
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3. ~ 5. (생략)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
방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지 및 건물을-----

2.·3. (현행과 같음)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산불진화기관에 대한 산
림재난방지 관련 정보 제공,
시설·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 5. (현행과 같음)

② -----
-----소방청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u>산림청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u>산림재난방지기관</u>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u>산림재난방지기관</u>의 장은 이를 산림재난방지 등에 이용·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u>초동조치 및 지휘</u>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 ----- -----<u>산림청장, 소방청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불진화기관의 장에게</u>-----.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불진화기관</u>----- -----<u>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불진화기관</u>-----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① - ----- -----<u>초동조치</u>----- ----- -----.
--	---

② (생 략)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
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
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
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
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
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대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
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
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

-----경우-----

-----.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방 체계-----

--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③ -----

-----필요한-----

-----<후단 삭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
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
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1조(산불 신고) 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
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
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
불 발생 신고를 받은 관할 산
림재난방지기관은 현장에 신속
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

④ -----
-----산
불 발생에 대비하여-----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산불 신고) ① -----

-----산림재난방지기
관, 산불진화기관-----

-----.

②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산불진
화기관-----.

③ -----
-----산불
진화기관-----

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①

산림청장은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이 조에서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의 신
속한 동원을 위하여 발생한 산
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
고,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
화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발령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대응 단
계의 발령 방법, 산불진화자원
의 동원 기준, 발령 사항의 대
국민 알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삭 제>

<삭 제>

<삭 제>

제34조(산불 진화) 산불 진화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삭 제>

<삭 제>

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
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
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
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인 경
우를 말한다)은 산불 발생·진
화·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
생하였거나 대형 산불로 확산
이 우려되는 산불(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
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
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
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삭 제>

<삭 제>

<삭 제>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2.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방법·절차·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협조) ① 산불진화기관의 장-----

-----.

1. 산림재난방지기관

2. ~ 7. (현행과 같음)

② -----
-----산불진화기관의 장-----
-----.

③ -----산불진화기관의 장-----

-----.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생략)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8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산불진화단-----

-----.

1.·2. (현행과 같음)

3. 산불현장에서의 산불진화기 관의 장에 대한-----

4. (현행과 같음)

5. -----진화-----

②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산불 조사) ① -----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하여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실험, 대응 분석·평가 등(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⑤ (생략)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조사·복구
2.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3.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 이 경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
-----산불의 예방,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

<삭 제>

<삭 제>

<삭 제>

기능시험 · 이동 · 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4.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생 략)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
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대원

3. ~ 5. (생 략)

③ · ④ (생 략)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
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
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
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

-----활동

-----.

사람에게는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